

## 1 과제신청 기본사항 관련

### Q1-1. 통합공고 상 다수의 RFP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 지원하시려는 과제의 연구 목표, 연구 내용 등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 RFP별 지원분야 및 지원과제 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고자 하는 RFP 필수 확인

### Q1-2. 과제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 요건은 공고안내서의 RFP별 과제구성 요건 및 각 사업별 RFP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RFP별 지원대상 및 특기사항의 필수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필수 확인 후 신청

※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③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과제 구성 요건 (예시)	① 주관	② 주관+공동	③ 컨소시엄
	주관 ○○대 / A교수	주관 ○○대 / A교수 공동1 △△대 / B교수 ..... 공동N □□대 / C교수	주관 ○○대 / A교수 공동 △△대 / B교수 ..... 주관 □□대 / C교수 공동 ◇◇대 / D교수 .....
* ①,②의 경우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 컨소시엄에 대한 설명은 해당 RFP 참조	

### Q1-3. 동일 연구개발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며,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sup>\*</sup>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일 법인번호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장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61페이지) 참고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input type="radio"/> 기관	<input checked="" type="radio"/> 기관	<input type="radio"/> 기관	<input checked="" type="radio"/> 기관	<input type="radio"/>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input type="checkbox"/> 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관	<input type="checkbox"/> 기관	<input type="checkbox"/> 기관	<input type="checkbox"/>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input type="triangle"/> 기관	<input type="checkbox"/> 기관	<input type="checkbox"/> 기관	<input type="triangle"/> 기관	<input type="triangle"/>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input type="star"/> 기관	<input type="star"/> 기관	<input type="triangle"/> 기관	<input checked="" type="radio"/> 기관	<input type="checkbox"/> 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Q1-4.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필수인가요?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 단, RPF 14-1(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5-1(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는 RPF 내 지원대상 참고

### Q1-5. 기업 참여 시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제약조건이 있나요?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 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첨부2) 검토 항목에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첨부서류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고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이 외에 범부처 국가 R&D 참여제한 예외기준(안)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에서 제외

< 범부처 국가 R&D 참여제한 예외기준(안)>

신청자격 제한	예외기준(안)	추가 증빙서류
세금체납 / 채무 불이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재기지원보증 대상기관 확인 서류(지원대상/보증 대상 통보공문, 협약서 등)
회생·파산	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 최근 변제금 납부 확인 내역(은행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등)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등
부채비율 / 자본잠식	①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③ 선정평가 전(3 영업일 전)까지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계약서(약정서) · 해당 차입금 및 상환우선주에 대한 결산 명세서 · 투자 금액에 대한 계약서(약정서) 또는 결산 명세서 · 외부회계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 ·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수정 재무제표 등

### Q1-6. 가감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감점 항목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선정평가 중 ‘연구개발과제의 기감점 기준·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가점 항목은 각 RFP에 제시된 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 \*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적용(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적용되지 않음)
-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 자료실 → 법규/서식 → 관련법규 → 가이드라인 참고

### Q1-7.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의 첨부서류 중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FP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 등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확인 필요

### Q1-8. 과제신청 마감 이후 신청 완료된 과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과제신청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9.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1-10. 과제구성요건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필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전산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www.iris.go.kr](http://www.iris.go.kr)) 추가 설정해야 하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비 등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전산 미설정 시 사전검토 탈락

## **Q1-11. 첨부서류 중 '(첨부5)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는 어떤 연구에 대해 작성하나요?**

- 비임상/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제는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 **Q1-12. 사전검토 주요 탈락 사례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하나의 과제에 동일 연구개발기관 중복구성(동일 법인번호)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법인번호가 중복되면 사전검토 탈락
- 과제제안요구서(RFP)별 지원대상 미충족(공동연구개발기관 미구성, 기업·병원·임상의학자 미참여 등)인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필수인 경우 전산 상 구성(추가)하지 않으면 사전검토 탈락(계획서 명시,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등록 등 사유 불인정)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부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간 만료 등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
  - \* 단, RFP 14-1(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5-1(최고급 해외인재 유치)는 RPF 내 지원대상 참고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그 외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미충족하는 경우  
※ 과제신청 전 반드시 RFP별 지원대상·필수요구 사항 등 확인 후 작성 및 제출

## **Q1-13. 과제 신청 완료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한가요?**

- 과제 신청 마감일(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하나, 과제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마감일 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IRIS상 주관연구기관에서 반려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IRIS상에서 과제신청이 최종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과제에 대한 기관담당자가 승인까지 완료해야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Q1-14. 연구개발계획서(PART2), 기타 서식 등 파일 업로드 후 PDF 변환 시 오류(글씨체 변경, 문서 깨짐 등)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PDF 변환 오류는 ① 첨부하는 문서가 ‘보안문서’ 일 경우, ② ‘숨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문서 내 ‘유료 및 번들폰트’ 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7. [참고] IRIS 관련 매뉴얼 내 「PDF 변환 오류 사례」에 문제사례별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1-15. 제출완료된 과제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제출회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출완료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 반려처리 없이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는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제출회수’ 버튼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 과제 상태가 ‘제출완료’ 또는 ‘기관담당자 승인’ 상태일 때만 제출회수가 가능합니다. (기관담당자 승인 대상 과제의 경우 책임자 접수 종료일 전에만 회수 가능. 접수기간 중이더라도 과제 상태가 ‘접수마감’ 이면 제출회수 불가)

※ 경로: R&D업무포털>과제접수>(신청용)연구개발계획서 우측 상단 ‘제출회수’버튼 클릭 후 사유 입력

## **Q1-1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DMP) 작성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제안요구서(RFP) 상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DMP) 제출이 명시된 과제가 대상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별로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

\* 과제제안요구서(RFP)별 첨부서류 확인요망

## 2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련

### RFP 1-1 AI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 구축 및 활용

#### Q1. 동 RFP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에 해당하나요?

- 본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기술사업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서 3책5공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25.10.22.) 심의 안건

#### Q2. 동 RFP에 따른 TRL 단계는 어디인가요?

- RFP 내용에 기반하여 의료기기 TRL6(시제품 설계·제작·성능평가) ~ TRL8(허가용 임상, 인허가·보험등재) 단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Q3.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이 서로 다른 주관연구개발기관(병원)과 구성하여 동 RFP 내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은 서로 다른 주관연구개발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구성할 경우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과제 신청 시 병원당 1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RFP 2-1 K-MediST 지원

#### Q1. 연구개발과제 구성방법은?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의과대학(원)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이공계열 대학원 (학위과정)을 보유한 대학(특정연구기관)을 구성으로 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대학 내 의과대학(원)-이공계열 대학원을 구성으로 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 주관-공동의 2개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3개 이상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지원 불가

## **Q2. 지원을 중복해도 되나요? 즉 A 의과대학이 B 대학의 이공계대학 과제 1개, A 의과대학이 C 대학의 이공계대학 과제 1개로 지원 및 선정이 가능할까요?**

- 한 개 의과대학에서 두 개의 다른 이공계 대학과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개 의과대학에서 두 개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따라서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상위 점수인 과제 1개만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시) 지원과제 : A의과대학-①이공계대학, A의과대학-②이공계대학, B의과대학-③이공계대학

선정예시1	선정예시 2
1순위 A-①, 2순위 A-②, 3순위 B-③	1순위 A-②, 2순위 B-③, 3순위 A-①
최종선정자 1순위 A-①, 3순위 B-③, 4순위	최종선정자 1순위 A-②, 4순위, 5순위

## **Q3. 공동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주관과 공동의 학생들이 상대방 학교에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지원책이 있나요?**

- 공동학위과정 및 공동연구를 위해 상대방 학교에 가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연구비 기준에 맞춰 학생(참여)연구원 출장비 등 지원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 **Q4. 공동학위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책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 공동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학생인건비 등 적극적 지원의지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학교 법인 등 내부의 장학금 마련 계획을 제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RFP 발췌) >

분야	지원내용
공동학위과정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이 협업하여 공동학위 기반의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및 공동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양 교간 공동학위(MD-PhD/PhD) 이수 체계 수립</li><li>- 교과목 개발, 교육자료(교재·연구실습, 비교과 콘텐츠 등) 마련, 공동지도 교수진 구성</li><li>- 공동 교육과정(대학원) 운영 및 공동학위 참여자 선발·관리, 학위 지원 제도 마련(<b>장학제도 등 교육인프라 구축</b>)</li><li>- 체계적 대면수업 개발 및 관리체계 마련</li></ul></li></ul>

## **Q5. 공동연구소의 위치는 의과대학과 원거리에 있는 학교 소속 병원이어도 되나요?**

- 공동연구소는 공동학위의 참여자가 공동교육, 학위취득, 융합연구, 실용화 및 병원의 임상 현장 기반 검증 및 테스트베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학위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공동연구소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의과대학 소재지를 벗어난 원거리의 병원에 공동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Q6. 이 사업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RFP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관연구책임자 뿐 아니라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학생연구원도 3책5공 예외인가요?**

- 이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으로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3책5공 제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3책5공을 위반하면 동일하게 혁신법상 제재를 받습니다.

### **RFP 3-1 RNA 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 **Q1. RFP 사업유형에 표시된 '혁신도전형 R&D'는 무엇인가요?**

- '혁신도전형(APRO\*) R&D'는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고자 범부처 R&D 사업 중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지정 및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APRO(앞으로, 이태리어로 문을 열다는 뜻,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유형,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first mover 가 되는 전환 의미), Aim high, Problem-solving, Revolutionary, Over & over

※ (참고)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24.3.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지원 중임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은 '24년 제2차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내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에 지정됨('24.6.5, 혁신도전특위)

## Q2. '혁신도전형(APRO) R&D'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혁신도전형 R&D'는 연구의 도전성 및 혁신성 등 혁신도전 R&D 평가 지표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선정평가 발표를 권장합니다.  
※ (참고) 선정평가 항목 중 '연구의 도전성 및 혁신성(30)' 및 '혁신도전형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10)'에 해당
- 또한, 도전적 목표 수립의 촉진을 위해 단계·최종 평가 시 평가등급(우수/보통/미흡)을 폐지하고 과정중심의 심층 정성평가를 도입합니다.

## Q3. "단일 화합물 개발 과제만 지원 가능(혼합물, 추출물 제외)" 이라는 요건에서 단일 화합물이란 small molecule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 '단일 화합물'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성이 명확히 규정된 하나의 활성 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의미하며, 저분자 화합물(Small molecule)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과제는 혼합물이나 추출물 형태가 아닌, 단일 성분으로 규격화된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화학적 합성 기반의 단일 저분자 화합물, 펩타이드, 올리고머 등 단일 구조를 갖는 물질이 이에 포함됩니다.
- 다만, 바이러스 생활사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면역조절 약물(항염증 치료제, 면역 치료제, 면역억제제 등) 개발 과제와 항체/혈장 치료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RFP 4-1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 Q1. 첨부서류 중 'TPP(Target Product Profile)'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 지원단계가 임상연구인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제 개발'의 성과목표 '임상 2상 IND 승인'과 '항진균제 내성진균 감염 치료제 개발'의 성과목표 'GLP 비임상 시험 검증 및 임상 1상 IND 승인'의 경우, TPP(Target Product Profile) 첨부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Q2. RFP에 제시된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예시)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 RFP에 제시된 성과목표는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다른 성과에 대해 추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RFP에 제시된 지원내용은 예시이므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연구과제도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분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참고) RFP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지원분야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필요

**Q1. AI 플랫폼 고도화에서 고도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AI 에이전트 기술을 꼭 활용해야 하나요?**

- 플랫폼의 고도화는 현재 보유한 플랫폼을 목표 저분자 신약후보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기사항의 플랫폼 보유 충족요건 항목의 모델, 성능 등의 개선)
- AI 에이전트 기술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AI 저분자 신약후보물질의 저분자 약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저분자 혹은 소분자 (small molecule) 약물, 즉 화학합성의약품을 의미합니다.
- 웹타이드, RNA 등 바이오의약품은 제외됩니다.

**Q3.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구성해야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제약회사 및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모두 가능합니다.
- 주관기관인 AI신약개발 플랫폼 보유기업과 협업하여 후보물질 발굴하고, 후속 신약개발 단계를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Q4. 성과목표② 약물의 유효성 평가 항목의 예시에서 경쟁약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동일표적단백질이 있는 경우, 동일 표적으로 허가된 혹은 개발 중인 약물을 의미합니다.
- 동일표적단백질이 없는 경우, 동일 질환에서의 허가된 혹은 개발 중인 약물을 의미합니다.

**Q5. 성과목표③ 비임상 진입가능한 후보물질 확보 항목에서의 평가성적서는 설치류와 비설치류 시험 모두 해당하나요?**

- 비임상진입 가능한 후보물질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류 외에 비설치류 대상 안전성 · 유효성 평가시험성적서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RFP 7-1, 2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신진, 심화)

### Q1.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공고의 RFP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이전사업명: K-Medi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양성’)의 과제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과제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연구기간과 군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을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경우

### Q2. ‘26년 2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과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24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증빙자료 [별첨2]박사학위 증명서에 박사학위취득예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학위 취득 후 3.4.(수)까지 보완서류(박사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담당자 메일(medirnd@khidi.or.kr) 제출

## RFP 7-3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 지원

### Q1. 해외 연수기간을 1년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요?

- 이 사업의 수행목적은 연수 수행입니다. 따라서 1년 연수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의 연구기간 내에 연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시일인 7월1일에 가급적 연수가 시작되도록 선정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 ▶ RFP 특기사항 및 기타 주의사항

##### 1. 해외 연수 시행 및 기간

- (해외연수기간) 1년 연수 수행(분할 연수 불가)
- 협약 개시일 이후 출국, 협약 종료일 전 귀국 원칙(출입국사실증명서를 근거하여 미준수 시 연구개발비 전액 환수)
- 연수 종료 후 5년간 연구활동, 진로 등 상태 매년 제출하여야 함(협약 종료 시 별도 안내)
- 연수기간 중 (연수 1년 기준) 15일을 초과하는 국내 체류일에 대해서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함

### Q2. 해외 연수기간 중에는 인건비 계상율을 반드시 100%로 수행하여야 하나요?

- 동 과제는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인재양성 과제로 해외 연수 기간 중에는 인건비 계상율 10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타 과제와 병행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 계상율을 10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인건비 계상율은 현금계상, 미지급, 현물지급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RFP 특기사항

- 해외 연수기간 동안 동 과제의 인건비 계상율은 100%로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130%로 계상하여야 함

### Q3. 해외 연수기관 및 연구 멘토와 협의 중인 경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과제 신청 시점에 연수기관 및 해외 연구 멘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계획서 제출 시(협약 전)에는 확정된 연수기관 및 멘토를 연수활동 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첨부 목록 참고)

▶ RFP 특기사항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글로벌 연수를 위한 희망 세부 연구분야 및 연수대상 국가/교류협력 기업 또는 기관을 반드시 명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수대상 기관에 각 1명씩 멘토\* 지정
    - \* 국내멘토는 연수자 및 연수비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및 과제수행 관련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와 함께 '멘토지정확인서' 필수 제출하여야 함
- ※ 과제 신청 시 해외 연수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기관 정보로 기재하고, 협약 전까지 연수기관 및 멘토에 대해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협약 불가)

### Q4. 이미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더라도 국내에 소속기관(공고문 참고)이 있으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평가는 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되므로 해당 일정에 맞춰 귀국이 필요합니다. 단 RFP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RFP 지원대상

- 과제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이중국적자, 외국인 또는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 Q5. RFP 자격요건 중 '보건복지부 해외연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 적용되는 사업은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일반회계)의 기관자율형 사업 및 연구자 협력형, K-MEDI 융합인재양성지원의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등 기타 복지부의 연수지원 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 모두 해당됩니다.

## Q6. 연수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력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주관연구책임자(연수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력이어야 하며, 과제 종료 시까지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과제 수행 중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Q7. 연수자가 소속기관 정규직인 경우 연구비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절을 숙지하시고 소속 기관에 문의하셔서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지급가능한지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학생의 경우는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 바랍
- 또한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에만 소속된 의사가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현금계상 가능」 하오니, 연구책임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속 기관에 문의하셔서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지급가능한지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www.htdream.kr→공지사항→인건비 현금계상 관련 규정해석(' 25.5.16) 참고)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비영리기관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무속의 기술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기록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술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위 공통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

## Q8.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본 과제의 지원 목적은 연구책임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으로서 연구책임자 1인만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연구원의 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참여 자체가 불가하므로, 수당지급도 불가합니다.

## Q1. 선행 연구개발과제가 보건의료 R&D 분야인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NTIS\* 홈페이지에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대분류에서 ‘LC.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TIS(<https://ntis.go.kr>) - ①R&D 데이터 - 국가 R&D 데이터 검색 - "보건의료" 검색 - “과제” 클릭  
- “검색필터” 사용하여 관련 연구과제 검색 / ②연구자와 연구기관 - 연구자 정보 - "연구책임자" 검색 - 관련 연구과제 확인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년 개정, 과기정통부 행정규칙, 제2025-60호)

## Q2. 지원대상 요건에서 ‘보건의료 R&D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과제’라면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만 해당되나요?

- 본 과제는 부처에 상관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중인 과제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Q3. 선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시장조사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제한되나요?

- 본 과제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주요 부처에서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개발과제가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면 본 과제 지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과제는 기술사업화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과제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Q4. 1단계에 선정되면 2단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에 선정된다고 2단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8개 과제에 한하여 2단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만, 1단계의 컨설팅 지원은 2단계의 scale-up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므로 연구개발계획서에는 2단계를 지원받을 경우를 가정하여 반드시 2단계의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RFP 11-1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증개연구

### Q1. 지원분야별 연구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원분야별 연구주제별로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임상현장의 문제와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해 작성한 개요서(별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FP 14-1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 [신청 기본 요건]

#### Q1. 연구개발과제의 구성(추진체계)과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연구개발기관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유치(채용)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과제구성은 주관기관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연구책임자 1명과 유치 연구자는 최대 5명까지 가능합니다.
- 인재유치계획의 구체성, 우수성, 유치연구자 활용계획 등을 중점평가하여 선정 합니다.

※ 과제는 연구책임자 1명과 참여연구자 n명(유치연구자는 최대 5명)으로 구성

※ 주관기관당 과제를 여러 개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1개 과제 이내 지원 여부를 확인

#### Q2. 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7조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책 5공 예외 사업임](#))

#### Q3. 국내에 설립된 외국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 Q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해당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 Q5. 유치후보 연구자는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요?

- 과제 신청시 연구자 개인을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유치대상과 유치기준의 구체성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고, 선정 후 유치계획에 따른 유치 후보자 채용 결과를 연구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과제 선정 후 조속한 채용절차를 통해 연구자 확정 바람)

### Q6. 국내에 체류/거주중인 외국인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교포(외국국적)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Q7.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해외 체류 중인 해외학위 취득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기관 채용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Q8. 연구업적 3편 이상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I, 빅데이터 관련 주제 또는 연구내용으로 연구업적 3편 이상이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연구업적 산정 기준 >

- ▶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1건 → 업적 1편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공동저자 수와 무관), 단 계재완료 논문만 해당
- ▶ (저서·역서) 단독 저작 1건 →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 → 업적 2편  
※ (인정기준) ①ISBN 부여된 도서 ②저자명이 도서에 명시 ③편서 및 학위논문을 출판한 도서 불인정
- ▶ (특허) 특허(등록특허) 1건 → 업적 1편

### Q9. 채용 형태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 채용 형태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형태로 기업과 연구자의 채용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 Q10.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전까지의 채용을 인정합니다.  
예) 사업공고일 2025년 12월 30일인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후의 채용까지 인정

## [신청 변경 요건]

### Q11. 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연구책임자 신분상 변동(퇴직 등)이 부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를 변경은 연구개발과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후 전문기관(보건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Q12. 과제 수행 중 연구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과제 참여 중단의 정당한 사유(국내외 이직/채용 등)에 따르며, 최초 유치계획과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로 변경(전문기관 승인 사항)하여야 합니다.  
※ (협약변경) 참여연구자 변경 신청 → 전문기관 승인 사항 및 보고

### Q13. 과제 수행 중 연구자 변경시 대체인력을 언제까지 채용해야 하나요?

- 과제 참여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 발생시, 대체인력은 기존 **연구자의 퇴직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 지연시에는 전문기관은 과제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Q14. 자율성과목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 기관의 자율성과목표는 필수는 아니며 선택 사항입니다. 연구수행 목표에 따라 1개 이상의 양적/질적 성과목표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목표 달성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연구목표와 연동되는) 성과목표를 자율수립  
※ 기술향상/개발의 경우 성능지표 등 자율 제시

## RFP 15-1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R&D)

## [신청 기본 요건]

### Q1. 연구개발과제의 구성(추진체계)와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연구개발기관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유치(채용)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인재유치계획의 구체성, 우수성, 유치연구자 활용계획 등을 중점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과제는 연구책임자 1명과 참여(유치)연구자 1명으로 구성(이 외 참여구성원은 없음)

## **Q2. 3책 5공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7조에 따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책 5공 예외 사업임](#))

## **Q3. 국내에 설립된 외국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 **Q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해당되는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 **Q5. 유치후보 연구자는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요?**

- 과제 신청시 연구자 개인을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유치대상과 유치기준의 구체성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고, 선정 후 유치계획에 따른 유치 후보자 채용 결과를 [연구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과제 선정 후 조속한 채용절차를 통해 연구자 확정 바람)

## **Q6. 국내에 체류/거주중인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지원가능하나, 과거에 해외 체류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Q7. 한국 국적의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한국 국적의 연구자도 가능하나, 위와 같이 사업 공고일 기준 n개월 전까지 해외 체류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Q8.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소속인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국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국내 기업 소속 연구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Q9. 필수적으로 국내에 정주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 국내에 정주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글로벌 업무를 위한 해외 체류는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 **Q10. 채용 형태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 채용 형태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형태로 기업과 연구자의 채용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 **Q11.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전까지의 채용을 인정합니다.

예) 사업공고일 12월 30일인 경우, 6월 30일 이후의 채용까지 인정

### **[신청 변경 요건]**

## **Q12. 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연구책임자 신분상 변동(퇴직 등)이 부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를 변경은 연구개발과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후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과제 참여 중단의 정당한 사유(국내외 이직/채용 등)에 따르며, 최초 유치 계획과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로 변경(전문기관 승인 사항)하여야 합니다.

※ (협약변경) 참여연구자 변경 신청 → 전문기관 승인 사항 및 보고

## **Q13. 과제 수행 중 연구자 변경 시 대체인력을 언제까지 채용해야 하나요?**

- 과제 참여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 발생시, 대체인력은 기존 **연구자의 퇴직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 지연시에는 전문기관은 과제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Q14. 자율성과목표는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 기관의 자율성과목표는 필수는 아니며 선택 사항입니다. 연구수행 목표에 따라 1개 이상의 양적/질적 성과목표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목표 달성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연구목표와 연동되는) 성과목표를 자율수립

※ 기술향상/개발의 경우 성능지표 등 자율 제시

### Q1. RFP 사업유형에 표시된 '혁신도전형 R&D'는 무엇인가요?

-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연구개발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선별·지정하고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고) 본 사업은 '25년 제3차 혁신도전형(APRO) R&D 사업군 중 '공개경쟁형'에 추가 지정됨 ('25.6.25.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

### Q2. '공개경쟁형 R&D'은 무엇인가요?

- 혁신도전형 과제 관리에 있어 경쟁 기획 방식, 동일 목표 다수 과제 선정·경쟁 등 경쟁형 방식이 적용되고, 수행과정, 성과 및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 이 유형은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Q3. 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항노화 및 역노화 기술 기반 유전자·세포치료제의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입니다. 따라서 1단계 연구 설계 및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참여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단계평가 시 2단계 선정 후에는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로 참여하여야 사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 Q4.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단일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 선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본 사업의 목적은 노화 자체를 자연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당초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단일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1단계에 항노화 및 역노화의 기전 연구 등 메카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 1단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노화질환에서 실증하는 연구를 지향합니다.

※ FAQ 내용은 필요 시 추가보완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